신지원

교 재 명	2026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기본서
저 자	전표훈 편저
발 행 일	2026년 1월 10일

출간 이후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정오표를 안내 드립니다.
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, 해당 내용은 차기 인쇄 시 반영하여 수정 출간하겠습니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등록일	비고
73P 상단	**① 공사시행인가 신청** ㉡ **일반물류터미널사업**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·도지사**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.	**① 공사시행인가 신청** ㉡ **일반물류터미널사업**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·도지사 등**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.	2026-07-06	법 개정
73P 중간	**② 변경인가** 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**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**② 변경인가** 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 등**은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2026-07-06	법 개정
74P 하단	**(5) 국·공유지의 처분제한(법 제13조)**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(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)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**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**(5) 국·공유지의 처분제한(법 제13조)**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(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)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 등**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2026-07-06	법 개정

신지원

161P 상단 그림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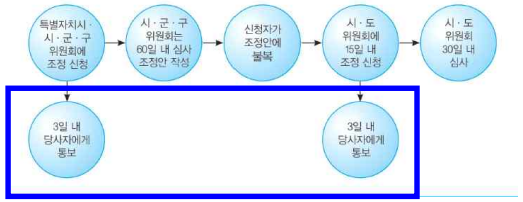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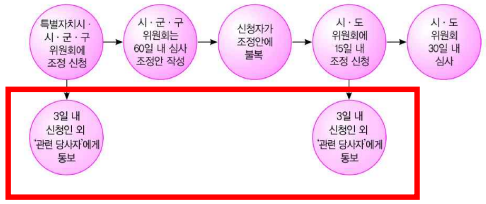	2026-04-15	오류
203P 하단	**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(법 제8조)** 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·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가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나. **20세** 이상일 것 다. 운전경력이 2년 이상**일 것. 다만,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**	**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(법 제8조)** 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·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가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나. **18세** 이상일 것 다. 운전경력이 2년 이상**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(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)이 1년 이상일 것** **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 **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 **- 「병역법」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(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 중 화물자동차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	2026-07-06	법 개정
225P 하단	**(1) 개념(법 제2조 제9호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	**(1) 개념(법 제2조 제9호)** ① 특별시장·**통합특별시장**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	2026-07-06	법 개정
276P 중간	㉡ 휴업기간 :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	㉡ 휴업기간 :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 **다만,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, 철도시설의 개량,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**	2026-07-09	내용 추가